#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0

발의연월일: 2022. 10. 14.

발 의 자: 안규백·강선우·김교흥

김병욱 · 김수흥 · 설 훈

양향자 • 윤준병 • 이용빈

인재근 • 전용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 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 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가 본인의 퇴 역연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연금을 지급함 으로써 퇴역연금수급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고 나아가 퇴직군인 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이에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

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안 제27조제1항).

법률 제 호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
에 취임한 사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본인 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의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 금액을 지급 정지하고, 제3호부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 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 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 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